

카르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리니언시 제도 간의 관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 이 석 준

1. 카르텔 가담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리니언시 제도와의 관계

경쟁법의 사적집행은 경쟁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보상(Redress and Compensation), 위반자에 대한 제재(Punishment) 등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Deterrence)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에 공적집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공적집행과 함께 경쟁법 집행의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공적집행은 인력과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위반사건을 다룰 수 없다.

또, 공적집행으로는 행정적 시정조치 내지는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구제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집행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제고하기 위해 사적집행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법체계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지만 경쟁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 허용,¹⁾ 3배 손해배상제도 허용, 금지청구제도 인정 등으로 사적집행이 가장 발달해, 사적집행의 비중이 전체 경쟁법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동안 공적집행에 비해 사적집행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유럽의 경우는 2005년부터 사적집행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지만, 3배 손해배상제도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쟁법 위반으로 입은 피해의 집단손해배상(Class Action)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 4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시정조치 사전확정주의를 폐지하고,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적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단손해배상소송이나 금지청구제도, 3배 손해배상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1) 미국의 경우는 Opt-ou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사적집행의 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이슈는,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후에 제기되는 민간의 손해배상 소송(Follow-on Actions) 활성화가 카르텔의 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사적집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경쟁당국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난 후에 제기되는 경우(Follow-on Claims)가 많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는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의 리니언시 신청의 유인(誘引)을 감소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²⁾

이는 리니언시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행위 관련 증거를 스스로 제출한 기업의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면 공동행위 가담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니언시 신청 시에 제출한 증거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이 카르텔 가담자의 리니언시 신청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2. 경쟁법 선진 각국의 사례

카르텔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리니언시 신청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진 각국에서는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리니언시 신청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경쟁당국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면제해 주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배상금액을 감액해 주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자(Cartel Victim)나 다른 카르텔 가담자 등이 리니언시 신청자가 경쟁당국에 제출한 진술이나 자료(리니언시 신청자의 신원정보 포함) 등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내용을 각 국가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의회가 2004년 6월 'Antitrust Criminal Penalty and Reform Act' 를 통과시켜, 원고(Civil Plaintiff)가 다른 카르텔 가담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리니언시 신청자가 원고를 지원(Cooperate)하는 경우는 3배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며, 자신이 끼친 개별손해(Single Damages)만 배상하면 된다.

이는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협조하는 리니언시 신청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크게

2) ICN에서 일부 국가의 NGO를 대상으로 카르텔 사건의 공정집행과 사적집행(집단소송 포함) 간의 갈등관계에 대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공적 집행 후에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의 우려 때문에 카르텔 가담자가 리니언시(특히, 부분감면에 해당되는 경우)를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적집행 사건에서는 리니언시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기될 수 있는 사적소송을 염두에 두고 리니언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견해도 상당했다.

줄여주는 것이므로 카르텔 가담 기업들에게 리니언시를 신청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협조가 만족스러울 정도였는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하며, 협조의 내용과 수준은 ① 리니언시 신청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② 자기가 소유 내지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③ 자사의 임직원이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신청자의 신원과 제공한 정보에 대해 리니언시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모두 비밀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3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의회가 요청한 경우와 경쟁당국인 DOJ와 FTC 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조사 목적을 위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는 제3자의 정보 제공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EU위원회(Commission)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리니언시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리니언시 신청자에게는 연대책임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도 실제 입힌 손해로 감경해 주고 있다.

또한 경쟁당국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일반적 제공원칙과는 다르게, 리니언시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는 EU 회원국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리니언시 신청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회원국 법원의 비밀보장이 없으면 제공을 거절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행정벌과금(Administrative Fine)을 면제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손해배상수준을 감액하거나 연대배상책임을 면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리니언시 신청자의 신원사항과 제출 증거에 대해서는 다른 제3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금액이나 연대배상책임을 감경하지 않는 이유는 리니언시 신청의 주된 목적이 행정벌과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 경쟁당국도 리니언시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소제기자(Cartel Victim)의 접근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³⁾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이나 연대책임의 면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카르텔 가담자들에게 구상(求償)을 100% 허용하고 있다.

접근이 거부되는 자료는 리니언시 자료에 국한되고 그 외의 자료는 접근이 허용되며,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에게는 접근이 완전 봉쇄되지만 피해자인 손해배상 청구자(Claimant)에게는 리니언시 지위 확인자의 동의가 있으면 접근이 허용된다.

3) 리니언시 지위 확인을 받지 못했어도 보호를 받게 된다.

3. 시사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법 선진 각국들은 시정조치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인해 리니언시 신청 유인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니언시 신청자의 책임 범위를 범위반에 의해 실제 피해를 입힌 개별 손해로 국한하거나 리니언시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리니언시 제도가 카르텔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잘 운용되고 있다. 현재 민간의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제도와 리니언시 제도 간의 충돌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활성화될 경우, 양 제도 간의 충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문제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경쟁법 선진 각국과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리니언시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접근에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카르텔 가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쟁법 선진 각국들과 마찬가지로 리니언시 신청자에게는 연대책임을 면제하고 리니언시 신청기업이 입힌 개별손해만 배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당해 사건의 기록(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제56조의2),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 신청이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및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리니언시 신청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22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이는 카르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카르텔 가담기업도 법원을 통해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카르텔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접근에는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은 리니언시 신청기업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경쟁법 선진 각국에서와 같이 리니언시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의 공개나 접근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법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를 리니언시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카르텔 가담기업 등 제3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제공을 거절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